

휴직 및 복직

1 휴·복직 제도의 개요

가. 목적

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,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, 법률상 의무이행,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
나.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

- 1) 직권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)
 - 가) 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: 1년 이내(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)
 (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 - 나)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: 복무기간
 - 다) 천재지변이나 전시·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: 3개월 이내
 - 라)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: 의무복무기간
 - 마)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종사하게 된 경우: 전임으로 종사하는 기간
- 2) 청원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)호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)
 - 가)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: 3년 이내(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)
 - 나) 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: 고용기간(단,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)
 - 다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: 3년 이내
 또한, 만 19세 미만의 아동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)을 입양하는 경우: 6개월 이내
 - 라)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: 1년 이내(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)
 - 마)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: 3년 이내